



## 2024년 전기설비 규모별 사업대가 전기설비 안전관리 직접인건비 산정기준 (2024년)

〈 용량별 전기설비 규모별 사업대가 산정 예시 〉

(VAT 포함)

설비 규모 (용량)		점검횟수	사업대가 (월)
저압	50 kW	매월 1회 이상	145,483 원
	100 kW		163,094 원
	200 kW		183,768 원
	300 kW	매월 2회 이상	196,785 원
	400 kW		341,502 원
	500 kW		359,114 원
고압 및 특고압	100 kW	매월 1회 이상	241,961 원
	200 kW		267,995 원
	300 kW		284,075 원
	400 kW	매월 2회 이상	454,060 원
	500 kW		472,438 원
	600 kW		656,206 원
	700 kW	매월 3회 이상	673,051 원
	800 kW		866,008 원
	900 kW		885,916 원
	1,000 kW	매월 4회 이상	1,303,224 원
	1,250 kW		1,362,183 원
	1,500 kW		1,584,000 원
	2,000 kW	매월 5회 이상	2,168,980 원
	2,500 kW		2,892,010 원
	3,500 kW		3,300,000 원
4,500 kW	매월 6회 이상	3,300,000 원	
		3,960,000 원	

- 1) 해당 기준표는 산업부의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(부록)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 설비 규모별 사업대가(예시)입니다.
- 2) 사업대가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20%,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5%,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합 30%를 적용하였습니다.
- 3) 위 표의 전기설비 규모별 사업대가 및 용량별 · 항목별 사업대가는 엔지니어링 대가 산정 서비스([www.engcost.or.kr](http://www.engcost.or.kr))에서 직접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.

이 전기설비 규모별 사업대가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법제지원처 ☎(02-2182-0741~3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산업통상자원부 (공표)



## 2024년 전기설비 규모별 사업대가 전기설비 안전관리 직접인건비 산정기준 (2024년)

### <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대가 산정기준 >

◆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(代價)는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

\* 해당 조문 :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2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

### < 대행사업대가 산정방법 >

◆ 사업대가\* = 직접인건비 + 직접경비 + 제경비 + 기술료 + 부가가치세

\* 「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(산업부고시 제2021-137호)」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

- ① 직접인건비 : 기본업무별 투입인원수 × 기술등급별 노임단가(중급)
- ② 직접경비 :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, 특수자료비 등으로 실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의 일체를 계산하여 적용
- ③ 제 경 비 :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, 경영,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직접인건비의 110 ~ 120%로 계산
- ④ 기 술 료 :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·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직접 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~ 40%로 계산

### < 2024년 엔지니어링 적용 노임단가 >

◆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(엔지니어링 노임단가)

(단위 : 원, 1인 1일 기준)

구 분	기술사	특급기술자	고급기술자	중급기술자
전 기	441,283	340,456	289,628	278,902

- 상기 제시된 임금은 1일 평균임금(만근한 기술자 월 인건비(원) ÷ 1개월 평균 근무일수(일))

- 적용일 : 2024년 1월 1일 부터

## 한국전기기술인협회

**전기안전관리자는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24조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.**

- ① 전기설비(용량)별 법에서 정한 최소 점검횟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② 전기안전관리 점검기록부는 4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.
- ③ 직무고시에 따른 주기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- ④ 소유자(점유자)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보수조치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.
- ☞ 협회에서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위의 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성실, 제 규정 미 준수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.

한국전기기술인협회(<http://www.keea.or.kr>) [정책 및 법제도개선 건의]